

운	영	위	원	회
소				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수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수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4
----------	-----

발의연월일 : 2023년 8월 21일

발의자 : 경수현, 정기혁, 정병기, 김경이,
강수진, 김육영, 양순임, 소형준,
정윤주, 이호건, 정해숙, 진선아

1. 제안이유

지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위원회의 회의 사항을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개정하여 규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회의 구성 인원 지정(제4조 2항)

나. 위원회의 회의 출석 인원 변경(제4조 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 2023. 8. 21. ~ 2023. 8. 2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본문 중 “과반수 출석”을 “제2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조제2항 각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전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생략)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조 제2항 각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이 전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u>
<u>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출 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다만, 「지방공무 원 임용령」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u>	<u>③ ----- 제2항에 따 른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u> -----. ----- ----- -----.
<u>③ (생략)</u>	<u>④ (현행 제3항과 같음)</u>